검수규정

2011.12.1. 개정
1999.10.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계약에 의하여 조달하는 물품의 검수절차와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모든 물품의 검수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물품"이라 함은 공사와 취득 상 검수가 불필요한 재산을 제외한 목적물 일체를 말한다.
2. "검수"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납품되는 물품이 규격, 시방서, 설계서 기타 계약조항과의 합치여부를 검사 시험하고 합격여부를 판정함을 말한다.
3. "확인자"라 함은 물품구매 요구자 또는 사용자를 말하며 검수자의 검수판정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통제 및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4. "납품기일"이라 함은 계약서상에 명기된 물품이 지정된 장소까지 반입되어 소정의 검수를 완료하는 일자를 말한다.
5. "외관검사"라 함은 물품의 조직, 폭, 길이, 색상, 기타 형상 등의 품위에 대한 검사를 외관에 의한 판단으로 검사함을 말한다.
6. "전수검사"라 함은 물품의 전량을 검사하여 개개의 물품을 판정함을 말한다.
7. "표본추출검사"라 함은 lot 단위별 시료를 임의로 채취한 물품을 검사하여 해당 lot의 합격 여부를 판정함을 말한다.
8. "중간검사"라 함은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재료소재 또는 가공과정, 조립과정 등을 검사함을 말한다.
9. "최종검사"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납품되는 물품을 최종으로 검사함을 말한다.
10. "제작자 검사"라 함은 제작자 자체에서 검사함을 말한다.
11. "제3자 검사"라 함은 제3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함을 말한다.

제2장 검수절차

제4조(검수원칙) 각 물품 사용부서에서 검수자로 임명된 자가 검수하는 것을 말한다. 검수는 검수자가 검수한 후 확인자가 인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3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5조(검수자의 임명) 검수자는 구매담당 및 각 학과, 부서 자산담당으로 임명된 자를 검수자로 한다. 검수자가 전보 또는 면직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해임되며, 이 경우 검수자를 재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검수자의 책임) 검수자는 검수대상물품의 품질, 수량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검수 할 책임을 지며 계약위반사항을 발견한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검수자의 책임면제) 검수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수판정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1. 시험 및 분석결과에 의거 선의의 판정을 한 때
2. 표본추출 검사결과 발견되지 않는 재질상의 결함이 있을 때
3. 시험 시설이 교내 또는 국내에 없거나 현실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여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때

제8조(납품) 납품자는 납품기일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그 일부분이라도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제8조의 2(이행지체) ① 이행지체산정일수 산정기준은 계약서상의 납품일로부터 실제 납품받은 일까지를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행지체일수에 가산하여야 한다.

1. 부분적 미납의 또는 불합격품에 대한 체납기간
2 검수의뢰 및 시료채취의 부당한 지연기간
3. 기타 검수준비요구 사항의 지연기간

③ 계약납품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익일을 계약납품일로 한다. 다만, 휴일익일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았을 경우, 휴일은 지체일수에 가산한다.

④ 본 대학에 납품 후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검수방법에 구애없이 지체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시험결과 불합격 판정에 대한 납품자의 이의 제기로 재시험한 결과 다시 불합격으로 판정된 때에는 재시험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제9조(검수기간) 검수자는 납품자로부터 검수의뢰를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불가항력, 성능테스트 등 기일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검수기간의 지연을 인정한다.

제10조 (검수장소) 검수는 계약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검수자가 그 임무를 다 할 수 없을 때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장소가 협소하여 개량 파악이 곤란할 때
2. 환경이 복잡하여 검수 도중 물품의 부정한 이동이나 혼입의 우려가 있을 때
3. 물품의 이용 또는 운반이 곤란하거나 2차 운반비를 절감 할 수 있을 때
4. 정밀검사용 기기가 구비된 장소에서 검수할 필요가 있을 때
5. 기타 부득이 경우

제11조(검수의뢰) 납품자는 검수준비를 완료하면 사용부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검수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제출이 지연될 경우에는 경과일수를 지체일수에 가산한다.

1.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2. 납품자 자체 시험성적서
3. 수입면장(수입품의 경우)

제12조(검수준비) 검수자는 검사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계약서, 규격서 및 견품의 확인
2. 검수의뢰서 및 검사계획서의 검토
3. 검사기구의 준비
4. 계약자의 동종 품목에 대한 납품 및 검사 실적사항
5. 참고서적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검수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품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공하게 하거나 수검물품의 취급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검수입회) 검수할 때에는 납품자를 입회시켜 정당한 의사표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검수절차) 검수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물품별 검사순위의 결정
2. 수검품의 수량 점검
3. 검사로트의 구성 및 확인 시료의 채취 및 조사
4. 검사 및 시험
5. 합격, 불합격의 판정
6. 검사기록 및 검수업무 결과 정리
7. 검수확인서 작성

제15조(이력관리) 계약담당부서는 업체별 납품실적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한다. 납품실적이 불량한 업체에 대하여 계약담당부서는 일정기간동안 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검수방법

제16조(외관 검사) 검수는 납품된 물품을 하나하나의 검사 확인함을 원칙을 한다. 다만 전량검사가 부적당하거나 곤란할 때는 그 일부를 추출하여 검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관검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량검사가 부적당하거나 곤란할 때에는 그 일부를 추출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재질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품목(보편적인 규격품) :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2. K.S 표시품
3. 도입자재로 국제 검정에 합격된 제품
4. 공인 기관의 검사합격품

제17조(전수 검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결함이 있으면 인명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2. 불량품의 혼입이 전혀 허용되지 않을 경우
3. 물품의 단가가 고가일 경우
4. 검사비용에 비하여 효과가 더 크게 인정될 경우
5. 표본추출검사에 의하여서는 요구 품질수준을 확보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8조(표본추출검사) ①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표본추출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검수용 시료의 제공, 기타 경비는 납품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수량이 많아서 전수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2. 검사항목이 많거나 검사비용 및 시간이 과다 소요될 경우
3. 유기체의 경우
4. 품질기준이 명확하여 불완전한 전수검사에 비하여 신뢰성이 높은 결과가 필요한 경우
5. 어느 정도의 불량품 혼입이 허용될 경우

② 표본 추출검사에 있어서 로트를 구성할 때에는 동일조건하에서 제조 또는 가공된 균일성 있는 물품으로 구성하고 구성요인이 다른 물품은 품질별로 대표성이 있는 샘플을 채취하여야 한다.

제4장 판정

제19조(판정) 검수자는 검수결과 합격 또는 불합격판정을 한다. 합격판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검수결과가 계약과 일치한때에는 합격판정을 한다.

2. 검수결과 극히 경미한 하자로서 납품자가 용이하게 보완 할 수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 부서의 협조를 얻어 기한부 보완조건부로 합격판정을 하고 납품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기한내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처음부터 불합격인 것으로 한다.

3. 검수 결과 극히 경비한 하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계약담당 부서의 협조를 얻어 납품자와 감가조건에 합의하여 감가조건으로 합격 판정 할 수 있다. 다만, 감가한계와 조건이 약정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조건에 의한다.

가. 사용에 지장이 없을 때

나. 수요자가 긴급한때

다. 대체 구입이 불가능할 때

제20조(변경 판정) ① 검수담당부서장이 검수자의 검수판정 및 그 결과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검수자의 판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검수과정에 하자가 있을 때
2. 감가의 한계를 초과할 때
3. 하자가 극히 경미하여 용이하게 보완할 수 있을 때
4. 사용에 지장이 없고 수요가 긴급할 때
5. 기타 특히 필요한 때

② 확인자가 검수자의 판정을 변경한 때에는 그 판정 결과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판정의 독립) 검수자는 계약조항 관계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명의 검수자를 임명한때에는 전원 합의에 의하여야 하고 합의할 수 없을 때에는 검수자가 소속된 확인자의 판정에 의한다.

제22조(재납품) 검수에 불합격된 때에는 해약을 할 수 있다. 다만 본 대학이 재납품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수자가 소속된 확인자의 판정에 의한다.

제23조(재검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검수할 수 있다.

1. 납품자가 검수에 불합격되어 재납품할 때
2. 검수 판정 후 사용부서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때
3. 검수 판정 후 검인, 봉인 또는 합격표시가 파괴되었거나 식별이 곤란할 경우
4. 기타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확인자가 판단할 때

② 불합격된 물품의 재검수를 위하여 표본추출검사를 할 때에는 당초의 2배수를 채취하여 전량 합격기준 내이어야 하며 합격판정은 최종검사결과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